

社団法人 韓國水道協會

改正(1978. 11. 29)

改正(1980. 1. 9)

改正(1980. 11. 27)

定 款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本協會는 社団法人 韓國水道協會
(以下 協會라 한다)라 부른다.

第 2 條(目的) 協會는 上下水道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고 政府의 上下水道 施策에 協助하여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位置) 協會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며 必要한 地域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2 章 事 業

第 4 條(範圍) 協會는 第 2 條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上下水道施策 및 運營에 대한 建議, 諮問의 応答
2. 上下水道關係 資料의 調査, 統計 및 學術의 研究
3. 上下水道技術의 發展을 위한 研究
4. 上下水道關係標準示方書 및 上下水道用品의 規格에 關한 研究
5. 協會誌 및 기타 上下水道關係 圖書의 出版
6. 上下水道關係 行事開催 및 弘報活動
7. 上下水道關係 國際交流
8. 會員의 權益과 親睦
9.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위한 事業

第 3 章 會 員

第 5 條(會員資格) 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号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正會員) 正會員은 다음 各項에 該當하는 者로 正會員 2人以上의 推薦으로 理事會의 審査를 받은 者

가. (個人會員) 上下水道關係 從事者, 上下水道에 關한 學識 經驗이 있는 者, 上下水道 發展에 크게 貢獻한 者.

나. (企業體 會員) 上下水道關係 企業體

2. (名譽會員) 理事會에서 推戴하는 人士

3. (贊助會員) 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後援하는 個人, 또는 團體

4. (準會員) 위 各項에 該當되지 않는 者로 協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刊行물을 받고자 하는 者.

第 6 條(權利) 1. 正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協會의 모든 權益을 均霑하고 協會 運營에 直接 參與한다.

2. 名譽會員은 協會運營에 關한 意見을 提出할 수 있으며 總會나 理事會에서 發言할 수 있다.

第 7 條(義務) 1. 正會員은 定款과 諸規定 및 總會와 理事會의 決議事項을 遵守하며 會費를 納付한다.

2. 名譽會員은 協會의 諮問에 應하며 協會運營에 協助한다.

第 8 條(褒 賞) 上下水道 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거나 協會運營에 有功한 會員에게는 理事會의 決議로 이를 褒賞한다.

第 9 條(懲 戒) 會員으로서 上下水道 發展에 沮害되는 行爲를 하였거나 協會의 威信이나 名譽를 毀損케 한 事實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 決議로서 懲戒한다.

第 4 章 任 員

第10條(任員)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3人
3. 理 事 25人以内
4. 監 事 2人

第11條(選 出) 任員은 總會에서 正會員中에서 選出한다.

第12條(顧問) 協會에 若干名の 顧問을 둘 수 있다. 顧問은 理事會에서 推戴한다.

第13條(補 選) 理事에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任員 選出時 多得點者順으로 이를 補選한다.

第14條(任 期) 任員의 任期는 參個年으로 하고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 으로 한다. 但 會長은 壹回以上 連任할 수 없다.

第15條(職 務) 1. 會長은 協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理하며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但 會長 有故時는 會長이 미리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3. 理事는 理事會를 통하여 協會會務와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4. 監事는 協會의 財産과 業務 및 經理執行事項을 監査하며 總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5. 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實費와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 5 章 總 會

第16條(構 成) 1. 總會는 協會의 最高決議關機이며 正會員으로 構成한다.

2. 總會構成員은 그 議決權을 總會에 參席하는 다른 構成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하여 開會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7條(區 分) 1. 總會는 定期 및 臨時로 區分하고 定期總會는 每年 4月中 會長이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할 때 또는 構成員

參分之壹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3. 會長은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前項의 要求가 있을 때 이를 參拾日以内에 召集하여야 한다.

第18條(附議案件) 總會에 附議하는 案件은 다음과 같다.

1. 定款의 變更
2. 事業報告와 決算의 承認
3.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4. 任員 選出
5. 其他 理事會에서 附議하는 案件

第19條(委 任) 總會는 總會의 決議로서 附議案件의 一部를 理事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 6 章 理 事 會

第20條(構 成) 理事會는 會務決議機關이며 會長 副會長과 理事로 構成한다.

第21條(召 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나 在籍理事 過半數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22條(附議案件) 1.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의 處理

2. 總會에 附議할 議案의 備審查
3. 名譽會員, 贊助會員, 顧問의 推戴
4.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
5. 會員의 資格審查, 褒償, 懲戒
6. 會費의 額數 決定
7. 對外 建議, 陳情 및 諮問의 處理
8. 豫備費 支出의 承認
9. 其他 會務의 處理

第23條(委員會) 1. 理事會는 理事會決議로서 會務의 分野別處理를 위하여 編纂會 또는 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會에는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但 編纂會長 및 委員長은 任員이 兼任할 수 있다.

第 7 章 事 務 機 構

第24條(事務局) 協會의 事務를 分掌處理하기 위하

여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長과 職員을 두되 그에 必要한 規定은 따로 定한다.

第25條(事務局長 및 職員의 任免) 1.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提請에 依하여 會長이 任免하며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
2. 事務局長은 理事를 兼할 수 있다.

第 8 章 財 政

第26條(會計年度) 協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31日까지로 한다.

第27條(資産構成) 協會의 資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但 그 區分은 財務 會計規程으로 定한다.

第28條(經 費) 協會의 經費는 다음 歲入으로 充當한다.

1. 會 費
2. 特別會費
3. 補助金
4. 贊助金
5. 事業收入
6. 其他收入

第29條(會 費) 會費는 個人會費와 企業體會費로 區分하며 會費는 年 1回 納付한다.

但 그 額數는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30條(特別會計) 協會는 事業의 効率的인 運營과 獨立採算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은 特別會計로 할 수 있다.

第31條(監 查) 監事는 協會의 會計에 關한 事項을 年 2回以上 監査하여야 한다.

第32條(豫算의 追加更正) 總會에서 承認받은 豫算에 대하여 理事會의 決議로 追加 또는 更正을 할 수 있다. 但 總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 9 章 補 則

第33條(定款改正) 定款의 改正은 理事會의 決議나 在籍代議員 參分之壹 以上이 連署하여 總會에 提出되며 總會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員 參分之貳 以上の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34條(規 程) 本 定款 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따로 規程으로 定한다.

第35條(定足數) 總會는 構成員 五分之壹 以上 出席에 그 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하며 기타 會議는 在籍 參分之壹 以上 出席에 그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6條(議事錄) 協會의 모든 會議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그 議事錄에는 日時와 場所 會議經過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理事의 記名捺印을 받아 保管한다.

第37條(議事錄의 報告) 總會 및 理事會의 開催 結果는 議事錄을 添付하여 2週日以內에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38條(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總會에서 決議된 事業計劃 및 豫算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附 則

第39條(施行日) 本 定款은 社團法人의 認可를 얻음으로서 그 効力이 發生한다.

第40條(經過措置) 發起人은 協會의 設立과 同時에 當然히 會員이 되며, 設立登記 完了時까지 總會의 權限은 發起人會가 理事會의 權限은 發起人會에서 選出된 理事로서, 構成된 理事會가 各各 이 를 代行하며 追認받지 아니한다.

水 道〈第 26 號〉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水道協會
서울特別市龍山区漢江路1가243-6

編 纂 韓國水道協會編纂委員會
委員長 金 元 滿
主 幹 朴 亨 錫

〉 非 売 品 〈

電 話 794-5519

登録番號 第1第1-892

私書函 서울光化門郵遞局 565號

登録日字 1974年 8月27日

發行人 鄭 義 錫

1981年 12月 15日 印刷

1981年 12月 20日 發行